

의안 번호	1873	【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1. 11. 8.(금)
- 발 의 자 : 박채연의원 외 10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5.(수)

2. 제안이유

-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,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· 제공 자제(안 제5조)
-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사업 등(안 제6조)

4. 근거법령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,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담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검토한 바 시행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참고자료

※ 조례 제정 현황 (2021. 11. 08. 기준)

- 울산 3개(울산시, 동구, 울주군)
- 전국 총 125개 시·군·구 제정